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5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0.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며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조사·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

제6조에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7. 제5조제50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범죄
 - 가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116조부터 제118조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20조에 규정된 범죄
 - 나. 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」 제49조, 제50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1조에 규정된 범죄
 - 다. 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 제29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30조에 규정된 범죄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범죄행위 단속 사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,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원자력 안전 등 관련 행정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**대통령권한대행
국 무 총 리 황 교 안 인**

2016년 12월 20일

국 무 총 리 황 교 안
국 무 위 원 홍 운 식
행정자치부 장 관
(법무부 소관)

●법률 제14412호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4. 「형법」 제339조(강도강간)의 죄 및 제342조(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
- 제16조제2항 본문 중 “선고하는”을 “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선고할”을 “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“벌금형을 선고할”을 “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”로 한다.